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 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**

2019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110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(1) 제 출 자 : 이병도 의원(발의의원 17명)
- (2) 제 안 일 : 2019. 10. 16.
- (3) 회 부 일 : 2019. 10. 22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(1) 제안이유

- 노인과 장년층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- 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·심의 사항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# (2) 주요내용
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·심의 사항에서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)

### 3. 참고사항

- (1) 관련 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- (2)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(3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.
- 장년층과 노인의 욕구와 정책 지원은 서로 상이하여 장년층에 대한 제9조제1항 각조의 기능정책 자문 또는 심의는 별도로 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,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임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-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제21항제5호)
  -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 제30조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  -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장년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음.

### 제30조(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)

-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'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'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
  1.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3.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4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  5.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그러나 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여가·문화활동 등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같이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.

### 3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노인과 장년층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- 관련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장년층에게 적절한 정책 및 사업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장년층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<sup>1)</sup>

---

1) 의안번호 1111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제29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상정 및 대안반영폐기(의안번호 1219).  
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가결.